

2026년 기술닥터제 활성화 지원사업

Tech-Leap (테크립 기술도약) 지원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도 기술닥터제 활성화 지원사업, 테크립(기술도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북도지사,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개요

- 지원목적 : 2026년 기술닥터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의 비즈니스모델(BM) 설계 등이 필요한 기업의 후속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9,500천원(기업부담금 10%이상, VAT포함)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년 11월 20일(금)

단 계	프로그램	내 용	단 계	프로그램	내 용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 현장방문	2단계	테크립 기술도약	지원받은 기술을 통한 BM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부가세 포함				
단 계	프로그램	내 용	지원금액 (단위:천원)	기업부담금
2단계	테크립 기술도약	• 당해연도 현장애로기술지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받은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BM) 컨설팅 지원	9,500 이내	기업당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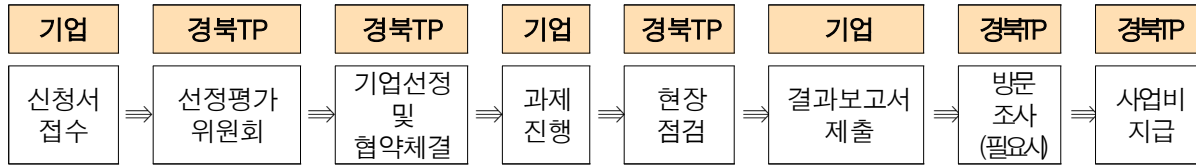
※ 지원금 내 컨설팅 최소 3회 이상 설정 필수(지원금에 포함)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2026년도 현장애로기술지원을 받은 경북 기업
- 신청자격 제한
 -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 중 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자

지원절차

○ 테크립 기술도약 지원



※ 테크립 기술도약 평가기준 : 지원의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의 합리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09.07.(월)~2026.09.21.(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❶ (재)경북테크노파크(www.gbtp.or.kr) 홈페이지 접속 → ❷ 공고·안내 > 사업공고 > 경북TP 클릭 → ❸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❹ 기본지원사업 신청 기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❺ 제출 버튼 클릭
※ 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로 신청내역 조회 가능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목록
1	테크립 기술지원 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직인날인 必
2	테크립 기술지원 계획서 1부[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 제3호]
4	중복지원 금지사항 및 평가결과 수락 협약 1부[서식 제4호]
5	기술지원서약서 1부[서식 제5호]
6	보안서약서 1부[서식 제6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9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10	공급기업의 견적서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11	공급기업 통장사본 1부.
※ 제출서류는 1개의 폴더에 압축하여 제출 (1~11 제출서류 순번대로 제출요망) - 파일명 : 테크립 기술도약 지원 신청서_000기업	

○ 문 의 처 : 경북테크노파크 김민수 연구원(053-819-3066)

○ 지원양식 : 붙임 참조

참고사항

○ 신청 · 접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기업지원금 지급

- 사업비는 결과평가 후 지급하며, 공급기업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이며, 지원금 외 금액(기업부담금 + 부가세)는 기업 부담.
-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및 최종결과 평가를 통해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보여질 경우(불성실수행)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모니터링

-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게 위해 협약기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음.

○ 협약의 변경

-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신청하여 TP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결과물제출

- 협약서에 기재된 일정에 맞추어 결과보고서 및 최종산출물을 제출해야 함.